정 관

1976년11월15일 제정 1977년 3월16일 개정 1977년 7월19일 개정 1978년 4월14일 개정 1980년 4월 1일 개정 1981년 8월26일 개정 1982년 4월 6일 개정 1985년10월25일 개정 1987년 4월20일 개정 1994년 1월10일 개정 1996년 4월 1일 개정 1998년12월 8일 개정 2006년 2월 1일 개정 2006년 8월30일 개정 2008년 2월15일 개정 2009년 2월20일 개정 2010년 2월23일 개정 2013년 2월21일 개정 2014년 2월20일 개정 2017년 2월17일 개정 2020년 2월21일 개정 2021년 2월25일 개정 2023년 4월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품위를 보전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해외건설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건설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국제수지향상과 국민경제 발

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8)

제3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
- 2.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3.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리증진 (개정 '98.12.8)
- 4.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 5.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금융·보증·차관 및 기자재의 공동구입 등 연계 업무 (개정 '20.2.21)
- 6.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개정 '98.12.8)
- 7. 해외건설업을 위한 홍보활동과 간행물의 발간
- 8. 해외건설업에 따른 각종 증명 및 확인업무
- 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개정 '09.2.20)(개정 '14.2.20)
- 10. 위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 11. 기타 해외건설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①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5조(국제기구가입) 협회는 회원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진출지역국과 긴밀한 교섭을 가지며 친선과 상호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09.2.20)(개정 '14.2.20)

제 2 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가입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12.8)(개정 '13.2.21)
 - 1. 정회원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개정 '98.12.8)

2. 특별회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준회원은 건설업과 관련된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와 건설기자재생산, 판매업체 및 금융기관 등으로한다. (개정 '06.2.1)(개정 '13.2.21)(개정 '14.2.20)(개정 '23.2.23)

「조 명칭 변경 '14.2.20]

- ② 협회는 회원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과는 별도로 예비회원을 둘 수 있다. 예비회원의 운영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1.2.25)
- 제7조(회원의 가입) 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가입 승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시 회원가입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3.2.23)
 - ③ 협회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 명칭 변경, 전문개정 '14.2.20]
-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 한다. (개정 '98.12.8)
 -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유하는 권리 (개정 '98.12.8)
 - 2. 이 정관 및 협회 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회원의 품위보전의 의무
 - 3. 회비납부의 의무
 - 4. 정관 및 제 규정으로 정하는 각종보고의 의무
 -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

- 제9조의2(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개정 '98.12.8)
 - 1.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위해 받은 국내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 등록, 신고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경우 (개정 '98.12.8)
 - 2. 회원이 탈퇴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개정 '98.12.8)
 - ② 회원이 정관 제36조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기간 중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에 있는 자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직이 정지된다. (개정 '98.12.8)
 - 1. 삭제 ('98.12.8)
 - 2. 삭제 ('98.12.8)
 -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탈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98.12.8)
 - ④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3(회원의 자격, 권리의무 승계)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는 법인의합병, 분할 또는 양도의 경우 승계할 수 있다.
 [전문신설 '13.2.21]

제 3 장 임 원

- **제10조(임원)** 협회에 회장 1인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내로 하고 감사(비상임) 1인을 둔다. 단, 회장 및 이사 3인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98.12.8)(개정 '06.8.30)(개정 '09.2.20)(개정 '17.2.17)
-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개정 '06.8.30)(개정 '09.2.20)(개정 '14.2.20)
 - ② 상임이사는 비회원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06.2.1)(개정 '06.8.30)(개정 '17.2.17)

- ③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회원의 대표이사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임기중 회원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자동 사임한 것으로 보고 이사회가 보선하여 선임한다. (개정 '10.2.23)
-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임원의 연임은 매 1년씩 2회에 한한다. (개정 '98.12.8)(개정 '13.2.21) (개정 '17.2.17)
 -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일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상임임원으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개시하며 비상임이사 및 감사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09.2.20)(개정 '10.2.23)
- 제14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되고 회무를 통리한다.
 - ② 삭제 ('98.12.8)
 -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12.8)(개정 '06.8.30)(개정 '13.2.21)(개정 '17.2.17)
 - ④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감사상황을 총회에서 보고하며 회장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7.2.17)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 개시 2월안에 회장이 소집 한다. (개정 '06.2.1)
 -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 3.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미리 의안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서면통지하고 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7조(의사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1/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3.2.23)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호의 경우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19조제4호의 경우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대리인 출석의 제한)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게 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 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장에게 총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관의 변경
-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3. 회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출
- 4. 협회의 해산
- 5.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총회의안으로서 긴급을 요하고 총회를 소집 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안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은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의 변경, 회장의 선출, 협회의 해산 등은 예외로 한다.

- ② 전항의 서면결의 결과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회의록의 작성보관) 총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회원수 및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22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전일까지 의안을 미리 이사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④ 이사회의 의안이 긴급하고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3조(대리인 출석의 제한)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게 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선임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선 (개정 '06.2.1) (개정 '06.8.30) (개정 '10.2.23)
 - 2. 직제, 인사관리, 예산회계, 회비, 급여, 발전기금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08.2.15)(개정 '17.2.17)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4. 기채 및 예산의 전용
- 5. 회원의 복리, 포상 및 징계
- 6. 회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과 기금의 전용
- 7. 해외건설회관건립 이외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17.2.17) (개정 '20.2.21)
- 8. 협회 산하 신설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
- 9. 고문의 위촉 (개정 '98.12.8) (호 번호 변경 '20.2.21)
- 10. 총회 부의안건 심의 (개정 '98.12.8) (호 번호 변경 '20.2.21)
- 11.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98.12.8) (호 번호 변경 '20.2.21)
- 제24조의2(이사회 특별결의) ① 제24조의 7호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출석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특별결의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전문신설 '17.2.17]
-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보관)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보관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자산) ①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 2. 회비
- 3. 사업에 따른 수입
-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5. 기타 수입

- 제27조(잉여금의 적립) ① 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 잉 여금의 1할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적립금 관리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28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28조의2(세입금의 수납기한) 협회는 매 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회비와 연회비는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 제29조(회비) ① 회비는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입회비, 연회비, 통상회비 로 구분하다.
 - 1. 입회비는 회원의 유형 및 영업의 종류별로 각각 부과하되 300만원이상으로 한다.(개정 '06.2.1)
 - 2. 연회비는 년1회 부과하되 50만원이상으로 한다.
 - 3. 통상회비는 매년 당해연도 해외공사 기성액의 10,000분의 3이내에서 부과한다. 다만, 준회원에 대하여는 통상회비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8)(개정 '13.2.2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30조(세입) 협회의 세입은 입회비, 연회비, 통상회비 및 보조금과 기타수 입으로 한다.
- 제31조(세출) ① 모든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③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는 2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09.2.20)

- 제32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결산 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다음 서류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보고서
 - 2. 재산목록
 - 3. 대차대조표
 - 4. 세입세출결산서
 - 5. 잉여금 또는 손실금처리안
- **제33조(급여)** ①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8.12.8)
 - ② 고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8)
- 제34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협회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 제35조(포상) 협회는 해외건설업 또는 협회 사업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등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경고

-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3회 이내의 출석정지
- 3. 회원의 자격정지
- 4. 회원의 자격상실 (신설 '08.2.15)
- 제37조(징계의 사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1. 회원이 정관이 정한 의무에 배치하여 회원의 단결을 저해하거나 해외 건설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2.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6월이상 체납한 때 (개정 '98.12.8)
 -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때

제 8 장 정관의 변경

- 제3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총회의결로 행한다.
 - 1. 회원 3분의 1 이상 연서하여 요구할 때
 - 2. 이사회가 요구할 때
 -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9.2.20)(개정 '14.2.20)

제 9 장 사무기구

- 제39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협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운영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0조(고문)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제41조(자문위원) ① 회장은 연구 및 정보화 추진과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8.12.8)
 - ② 회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제42조(규정의 제정)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당시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7조제2항에 의한 건설수출진흥원의 설치규정상의 기구 및 관장사무는 건설부장관의 설립허가와 동시에 대한건설협회로부터 본 협회가 이관받는다.
- ② (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 197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 197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본 협회 창립 당초의 회계연도는 1976년 11월 3일부터 1978 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의 시행일은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79. 7. 6) 부칙제②항에 의한 해외건설업면허증 교부일로부터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8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8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8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8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회원인 자는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고 감사는 임기가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기를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30)

- ① 이 정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조항 (제13조 임원의 보선)을 적용하지 않고 3년으로 한다.

부 칙

(2008.2.15)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20)

- ① 이 정관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2010.2.23)

이 정관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1)

- ① 이 정관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임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부 칙

(2014.2.20)

이 정관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17)

이 정관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21)

이 정관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25)

이 정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4.25)

이 정관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